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19-153
----------	--------

제출년월일 : 2019.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마포문화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

다.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시설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마포지역 문화 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라. 출연금

-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9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출연 금액 결정

마. 추진일정

- 2019. 11월 : 2020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수립
- 2019. 11월 : 구의회 의결 요청
- 2019. 12월 : 구의회 의결
- 2019. 12월 : 예산 심의 및 확정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 재산의 조성) 및 제11조(운영재원 등)

4.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총예산	자체수입	출연금	비고
2014	6,528,543	4,490,571	2,037,972	본예산 기준
2015	6,922,163	4,711,386	2,210,777	
2016	8,105,647	5,016,647	3,089,000	
2017	8,858,720	4,744,520	4,114,200	
2018	8,936,848	4,533,395	4,403,453	
2019	9,770,852	5,382,337	4,388,515	

5. 2020년도 출연금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총예산	자체수입	출연금	주요증액사유
10,187,317	3,766,232	6,421,085 (증10억4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비 4억7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2.8% 인상 - 마포구 생활임금 반영(10,523)원 ● 자체수익 감소 6억2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홀 리모델링에 따른 공연전시, 시설대관 등 수익감소 ● 찾아가는공연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900천원 ● 1학교 1음악단 인큐베이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00천원